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 259

제출연월일 : 2007.10.2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원도심활성화권역 기금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의 규정에 맞게 현행규정의일부를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지원사업의 심의절차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조문을 삭제함(안 제29조제6호).

나.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시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대상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함(안 제3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

조례」,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9. 7. ~ 9. 27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"위촉"을 "임명 또는 위촉"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"제2항제1호"를 "제2항제3호"로, "각 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결정된 원도심활성화권역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및 사업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기금에 대한 경과조치)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이를 승계 한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제29조(기능) (생략) 1.~5. (생략) 6.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도 선정 및 사업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7. (생략) 제30조(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, 이경우 시 소속 공무원 3인,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5인, 자치구 소속 공무원 5인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~5. (생략) ③시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원·자격·선정기준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4. (생략)	제29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-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-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

- 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 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, 노인,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,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10월 29일

3. 상 정 일 자: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

차 산업건설위원회(2007. 12. 6)상정, 심사,

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방재국장 박 월 훈)

1. 개정이유

원도심활성화권역 기금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의 규정에 맞게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지원사업의 심의절차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관련조문을 삭제함(안 제29조제6호).
- 나.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시 「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대상 중 공무원 및

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함(안 제30조제3항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예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2005. 8. 4일에 일부 개정되고 「대전광역 시 주민참여기본조례」가 2006. 11. 10일에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관련조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,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 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부칙에서 명시한 「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가 2007. 12.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간에 추진해 왔던 원도심활성화권역 및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보다 철저한 지원대책 마련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적극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 · 답변요지 : 생 략

V. **토 론 요 지**:생 략

VI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VI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